

● 임기제전문직관리세칙(040510)

제정 2019. 11. 19. 세칙 제519호
 개정 2020. 1. 29. 세칙 제524호
 개정 2020. 8. 21. 세칙 제541호
 개정 2020. 10. 5. 세칙 제543호
 개정 2021. 12. 23. 세칙 제598호
 개정 2022. 12. 28. 세칙 제627호
 개정 2023. 4. 4. 세칙 제634호
 개정 2023. 12. 20. 세칙 제650호
 개정 2024. 1. 31. 세칙 제654호
 개정 2024. 12. 19. 세칙 제66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규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기제전문직 직원(이하 ‘임기제전문직’ 이라 한다)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기제전문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임기제전문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일정기간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운영부서라 함은 임기제전문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직급 등) 임기제전문직의 직급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1” 과 같다.

제5조(정원) 임기제전문직의 정원은 「직제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직급별 운영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제 2 장 채용 및 전직

제6조(채용자격) ① 임기제전문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2” 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필요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상사·지속적 업무에는 임기제전문직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부정책 기준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공사의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제전문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절차) ① 임기제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부서는 임기제전문직 채용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공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기제전문직의 일시적인 채용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규정」 에 의한 경력경쟁시험으로 한다.

④ 직원의 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근무기간) ① 임기제전문직은 계약제로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해당사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에 대한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단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채용기간연장 대상자가 임기제전문직인 경우 차상위자)는 연장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서) ① 채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전문직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채용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수 등

제12조(보수) 임기제전문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직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노력, 책임 등을 평가하여 직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수의 범위는 “별표3”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4.1.31>

제12조의2(직무평가위원회) 직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4.1.31>

제13조(퇴직금) 임기제전문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근 무 평 정

제14조(근무실적의 평가) ① 사장은 임기제전문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와 보수액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근무실적평가 방법과 시기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근무평가지행세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복 무 등

제15조(복무 등) ① 임기제전문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임기제전문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임기제전문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분변경의 제한 등) ① 임기제전문직은 최초 근로계약서상 채용목적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타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19. 11. 19>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 29>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8. 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제1항의 개정 세칙은 이 시행세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기제 전문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 10. 5>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12. 23.>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12. 28.>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4. 4.>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4. 1. 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3.4.4.>

임기제 전문직원 직급명 및 직위표

구분	가급	나급	다급
직급	일반직 2급에 준함	일반직 3급에 준함	일반직 4급에 준함
직위	「직제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표 2】 <개정 20.10.5>

임기제전문직 채용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가” 등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등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p>“다” 등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 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3】 <개정 20.1.29, 21.12.23., 22.12.28. 23.12.20, 24.12.19.>

임기제전문직 보수표

(단위 : 천원)

직급	가급	나급	다급
기본연봉	~ 48,712	80,717 ~ 41,839	74,812 ~ 36,038

【별지 제1호 서식】

임기제 전문직 채용계획서

채용요구 부서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사업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채용 기간		고용 형태	
채용사유					
직종 및 담당업무					
소요예산					
기타사항					

붙임 임기제전문직 직무기술서 1부. 끝.

임기제전문직 직무 기술서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임기제 전문 급		

주요업무	
------	--

필요역량	
------	--

필요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학 력	
	경 력	
	자 격	
필수자격		
우대사항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근로 계약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기제전문직 관리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갑” 이라 하고, 임기제전문직원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을)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생 년 월 일 :

제2조(근무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해당 근무지 주소)

제3조(담당업무) “담당업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4조(계약기간) 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인 해당사업의 기간단축, 중단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 된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통보한 종료일에 “갑” 과 “을” 의 모든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③ 공사에 대한 기여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을” 은 “갑” 에게 계약기간 연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채용) 요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신분) : 임기제전문직(급)

제6조(소정근로시간) :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제7조(근무일/휴일) 월~금요일/ 일요일 등 공사 취업규정이 정하는 휴일

제8조(보수액)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9조(보수지급방법) 연봉은 공사 임기제전문직관리세칙 제12조 항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 이 공사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복무) “을” 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 이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공사 취업규정에 의거 근무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타업무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2조(권리의 공사승계) “을” 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 이 승계한다.

제13조(기타 채용조건) ① “을” 은 임기제전문직관리세칙 및 공사의 제반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 은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해석) 이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 ○ (인)

“을” ① 주 소 :

② 성 명 : (인)

③ 생 년 월 일 :

붙임 연봉계약서

